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징수대상 및 요금) ①제증명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제증명으로서 여러 건의 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며,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4조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별표2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 증명 수수료

(금액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징수금액
1. 신원에 관한 사항		
① 재직·경력 및 퇴직 등에 관한 증명	1 건	300
② 연수 및 이수 등에 관한 증명	1 건	300
③ 졸업(예정)·재학(제적)·성적 등에 관한 증명	1 건	300
2. 회계에 관한 증명		
① 납품 및 공사 사실에 관한 증명	1 건	300
② 원천징수 등에 관한 증명	1 건	300
3. 기타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	1 건	300

[별표 2]

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

	15 cm
1.5 cm	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